

과제번호 1	(건의내용) 통상임금의 정의 및 계산방법
관련부처 담당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강검윤 사무관 044-202-7544
검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대법원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그간의 노사 신뢰 원칙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를 가지고 논쟁하기보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이제는 전합 판결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통해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정년연장 및 장시간근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의 개편 노력이 필요 <input type="checkbox"/> 대기업·공공부문(경영평가 旣반영)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교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재정지원 등 준비 지원 확대 ○ 선도그룹 발굴, 노사협력 지원 등을 통해 직무·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여건 조성(관계부처, 유관기관 합동)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전합 판결을 기본으로 법률에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노사정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상임금 입법안 마련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5년

과제번호 2	(건의내용) 근로기준법상 불이익변경시 동의의무 철폐
관련부처 담당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강검윤 사무관 044-202-7544
검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신뢰보호 및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측면에 부합하고, -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상 동 규정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건의 내용과 같이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 규정을 철폐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현재도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근로기준과-1118, '09.4.24) ** 대법원 2001.1.5., 99다70846 등 ○ 다만, 근로조건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해석 지침 마련 예정 <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 철폐, 판단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 ○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이 사용자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자의적인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의 신고의무를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과제번호 3		유급휴가 금전보상 금지
관련부처 담당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최승훈 사무관 044-202-7546
검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유급휴가 금전보상을 폐지한다면, 연차휴가 활용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휴가를 가지 못하면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연차휴가 소진률이 낮은 상황('12년 46.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input type="checkbox"/> 노사 스스로 현행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금전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연차휴가 소진률을 제고할 필요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연차유급휴가 사용률 제고 등 일하는 방식 및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캠페인 및 홍보 실시(연중)
	추진완료 예정일	'15년 12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일가양득" 캠페인 및 장시간근로 개선 홍보 지속 전개(연중)

과제번호 4		○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하고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특정 직종 설정하고, 상용고용형 파견사업의 법제도화를 검토
관련부처 담당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박영 사무관 044-202-7576, 안태환 사무관 044-202-7575
검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은 기업의 고용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간 균형을 도모한 것임 ○ 고용보호에 대한 당위성이 약하거나 업무 또는 계약의 특성상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경우 등은 이미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특정 직종**은 사실상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것과 같음 * 사업의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 결원 대체, 고령자 사용, 전문지식 활용,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등 ** 박사, 기술사, 그 외 전문직종(건축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 ○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정규직 전환 등)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 다만,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근로자를 교체 사용하거나 외주화 하는 등으로 법을 회피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이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므로 개선안 마련 필요성은 있음 ○ 이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사용기간을 일부 조정* 하는 방안을 「비정규직 종합대책」(14.12.29. 발표)에 포함 한 바 있으며, 향후 노사정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임 *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신청시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예: 2년 범위 내, 35세 이상자 대상)하되 연장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직수당을 지급 <input type="checkbox"/> 상용형파견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p>파견을 고착화시키거나 기존의 정규직근로자를 오히려 파견 근로자화하여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도 상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상용형파견 도입은 향후 노동시장 상황과 노사 및 관계 전문가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 - 다만, 정부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무기계약 전환 촉진을 위해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15년) 하여 추진하고 있음 <p>*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노사정위 논의('15년 3월) 후 결과 반영하여 후속조치 추진 계획 별도 확정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5	<p>1. 업체의 원활한 관세조사 준비를 위해 조사목적(항목)과 절차 명확화</p> <p>2.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과세보다는 납세자에 대한 조언 강화</p>
관련부처 담당자	관세청 법인심사과 한용우 사무관 042-481-7981 관세청 기획심사팀 김기현 사무관 042-481-7885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건의사항 1) 관세청은 관세조사 원활화를 위해 조사 시작 10일 전까지 업체에 사전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기한*보다 준비기간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p> <p>* (관세법 제114조) 조사 시작 7일 전 사전통지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사전통지 시 구체적인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도 함께 사전 안내하며, ○ 업체의 자료준비 원활화를 위해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도 첨부하여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건의사항 2) 관세청은 관세조사 종료 시 '관세컨설팅'을 통하여 관세조사 결과 및 성실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수출입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법령준수도 향상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 <p>*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서도 참고 가능</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배포 및 순회컨설팅 개최
	추진완료 예정일	'15. 6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배포 및 순회컨설팅 개최('15. 6월)

과제번호 5	1. 업체의 원활한 관세조사 준비를 위해 조사목적(항목)과 절차 명확화 2.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과세보다는 납세자에 대한 조언 강화
관련부처 담당자	국세청 조사기획과 신재봉 서기관 044-204-3512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건의사항 1) 국세청은 조사착수 전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조사절차, 준비사항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과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건의사항 2) 국세청은 조사기간 종료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조사결과 적출내용 및 과세근거, 사후 회계처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14. 10월부터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의문·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담당 과장 면담을 신청하고,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납세자 소명서 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과제번호 6	(건의내용) 최저한세율 인상 억제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차현중 사무관 044-215-4132
검토의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12·'13년 최저한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 ○ 최저한세율은 비과세·감면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7	(건의내용)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을 유지(3배)하거나, 강화하더라도 적용 유예 기간 부여할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와 김미진 사무관 044-215-4335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금번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강화는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input type="checkbox"/> 또한 최근 OECD 국가들이 자국의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 * 호주는 '14년 법개정을 통해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을 종전 3배에서 1.5배로 조정하여 제도를 보다 강화 <input type="checkbox"/> 또한 국내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차입금 배수 기준을 3배에서 2배로 인하한 것이므로, 동 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8	(건의내용)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특허실시(ROYALTY), 상표사용료를 인정해 주기 바람	
관련부처 담당자	국세청 국제조사과 이선주 사무관 044-204-3652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노하우나 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가능하며 <input type="checkbox"/> 그 지급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의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이는 일본 등 외국투자기업 뿐 아니라 내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부합하는 규정임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9		관세 경정과 수정신고 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불문하고 경정 또는 수정신고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영근 주무관 044-215-4241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5조)을 개정한 취지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성실신고자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 □ 만약 건의내용과 같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개정취지에 반함 ○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수입자는 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허위신고에 대한 추징 실익이 없어지며, 성실신고자와의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10		(건의내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
관련부처 담당자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사무관 02-2100-1777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① 조세 논리 상 공제·감면 정비가 아닌 과세체계를 개편*한 사안이며, 당초 조특법에 근거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p> <p>* 종전의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제·감면 규정이 없어 부가세 구조상 법인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세 세 부담 혜택을 반사적으로 누린 사항</p> <p>② 이미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충분히 지원(7~15년간, '12년 380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투법인에 한해서만 차별화된 감면혜택 적용은 곤란</p> <p>※ 종전 감면 혜택 인정시 국내 다른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p> <p>③ 감면 10% 축소를 통한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업의 적극적 협조 필요</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11	(건의내용) 외국소재 모회사의 자산총액 산정 시 적용환산율			
관련부처 담당자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김종길주무관 042-481-8913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현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은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규정은 2013년도 서울재판클럽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단기간 환율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14.4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전</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small;">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증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td> <td style="font-size: small;">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td> </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건의의지) 회사 설립일(증자 시 증자한 날)의 증가환율 또는 당해 사업연도 말일 증가환율을 적용토록 개정요청 <input type="checkbox"/> (검토결과) 자산의 변동성 및 개정사유를 고려할 때 수용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회사 설립 등기일의 환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가치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함 * 실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화폐성외화 자산을 원화로 산정할 때 <u>회계기간말</u>의 매매기준율을 적용 또한, 당해 사업연도 말일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초 단기간의 환율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을 요구했던 서울재판클럽의 의견과도 배치 * “당해” 사업연도 말일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미래 시점이므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함 	종전	개정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증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
종전	개정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증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12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국세의 정상가격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경정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이주석 사무관 044-215-4334 다자관세협력과 서영주 사무관 044-215-4461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관세→국세 경정청구> <input type="checkbox"/> 「국조법」 제10조의2①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대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된 국세의 과세표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임 <input type="checkbox"/> 또한, '15.12.31 「국조법」 제10조의2③을 개정하여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은 관세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음 <국세→관세 경정청구> <input type="checkbox"/> 「관세법」 제38조의4 제1항에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대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경정처분 또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APA)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된 국세의 과세표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임 <input type="checkbox"/> 또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관세가격 경정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임 *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13	(건의내용)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통상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차입에 대한 납세자의 증명서류 제출 시 과세당국의 승인절차 규정 등 제정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김미진 사무관 044-215-4335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승인기한, 효력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여 자료제출 후 후속절차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input type="checkbox"/> 최근 4년간 납세자의 자료제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14	한국에 거점이 없는 일본기업의 생산위탁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의 취급에 관하여 (조세조약상 항구적 시설(PE)과 사업장 범위 일치)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영근 주무관 044-215-4241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input type="checkbox"/> 조세조약상 항구적시설(고정사업장)은 소득을 어느 나라에서 과세할지의 문제임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므로 조세조약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15	(건의내용) 교육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 도입 및 현물금융상품 거래손익과 금융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 허용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김명선 주무관 044-215-4163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신 교육세를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수익에 대한 과세원칙 및 분기별 과세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중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은 외형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손익의 통산 없이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낮은 세율(0.5%)로 과세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 내용인 현물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의 거래손익 통산은 교육세의 외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순손익과세 되는 거래에 대해 이월결손금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거래의 수익금액에 대해 낮은 세율(0.5%)로 과세하는 교육세의 과세체계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 내의 손익통산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일부 손익통산거래에 대해서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16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규제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금융위원회 송희경 사무관 2156-9874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은 원금초과손실이 가능한 초고위험 상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청산소가 부재하여 거래상대방의 결제리스크가 더 높음 <input type="checkbox"/> 최근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청산소(CCP)가 도입되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대상이 특정상품(적격 IRS)으로만 제한되어, 대부분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결제리스크는 여전히 상존 <input type="checkbox"/> 향후 CCP대상 확대를 통한 결제이행 추이 등을 감안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3-17	(건의내용)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완화·폐지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임재정 사무관(044-215-4751), 정혜윤 사무관(044-215-4752)	
검토의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선물환거래 관련 단기외채 증가 등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하고 외환부문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10년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그 결과 단기외채가 감소하는 등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 ○ 특히, 외은지점의 경우 주로 해외본점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에 비하여 한도 설정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 (국내은행) 자기자본의 50% → 40% → 30% (외은지점) 자기자본의 250% → 200% → 150% ○ 다만, 필요시 향후 자본유출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조치 전반에 대한 점검 중의 하나로써 포지션 한도를 재조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18	(건의내용) 헤지비율 확인대상을 거액거래로 한정 또는 사후적이고 정기적인 확인으로 하는 등 『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기준』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업무팀 김경진 선임조사역 02-3145-793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 곤란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현시점에서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Overhedge) 방지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한 동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수용 곤란 ○ 특히, 헤지비율* 확인대상을 거액거래로 한정하거나, 사후 확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한도부여기간 중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체결한 신규 외환파생상품 거래액을 합산한 금액(B)의 비율(B/A) ○ 거래규모를 나누어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과도한 환헤지 예방이 곤란해 사전에 부여된 한도를 통한 관리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19		(건의내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완화 ① ‘업무재위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망, 예외승인절차를 간소화, 업무수탁업자도 예외승인을 신청 ② 수탁기업이 ISO 27001을 취득한 경우, 수탁회사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개정
관련부처 담당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윤덕기 사무관 02-2156-9491
검토의견	검토결과	① 기 수용 / ② 신중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13.12월 「정보처리 위탁규정 안내서」를 발표하여, 재위탁 가능업무, 재위탁 가능환경, 재위탁 받는 수탁자의 제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술 <input type="checkbox"/> 다만, 수탁회사의 재량으로 재수탁회사를 선정하는 부분은 감독권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3-20		(건의내용) 시설자금과 관련한 자기자금 지불에서 외화대출 실행까지의 기간(현행 3개월) 연장 및 외화대출 실행 후 일정기간 국내예치 허용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와 입재정 사무관(044-215-4751) *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장진욱 과장(02-759-5762)
검토의견	검토결과	일부 수용(既반영)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선집행한 시설자금 외화대출은 용도 및 시기에 부합하는 자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실제 시설자금 용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외화대출 취급으로 인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동 기간을 확대할 경우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기간 연장은 곤란함 <input type="checkbox"/> 한편, 현재 해외 실수요 목적으로 외화대출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는 국내예치 후 해외송금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이 경우 기업의 용도와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외국환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하고 있음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3-21		(건의내용) 국내 외화실수요를 위한 외화대출 허용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임재정 사무관(044-215-4751) *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장진욱 과장(02-759-5762)
검토의견	검토결과	일부수용(既반영)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불필요한 외화수요 증가에 따른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외화차입은 외채 증가를 가져오는 데다 금융불안 시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금년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어서 만일 외화대출 규제 완화가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경우 대외부문 취약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 ○ 또한, 국내기업 입장에서도 원화용도 외화대출 시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위험 노출 등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음 <input type="checkbox"/> 다만,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해외에서의 직접 차입이 어려운 점과 국산설비산업의 육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대출 한도 내에서 국내 시설자금에 대해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3-22		(건의내용)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 해외송금 보고시스템의 개선
관련부처 담당자		관세청 외환조사과 김진선 사무관(042-481-7931)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임재정 사무관(044-215-4751) 한국은행 자본이동분석팀 정선영 과장(02-759-5806)
검토의견	검토결과	일부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현재 연 수입규모 5천만불 이상 기업의 사후송금 시 수입 명세를 입력(확인)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5호(이하 면제규정)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동 규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해당 거래가 면제규정의 요건(①연 수출/입 규모 5천만불 이상, ②수출/입대금의 수량·지급)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임 ○ 면제규정은 외국환은행이 동 규정 제2-1조의2 제4항에 따라 서류를 받아 확인표시 후 반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해당거래가 수출입대금의 거래임을 입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은행에서 수입신고번호, 품목을 입력하는 것은 서류제출 면제규정을 악용, 수입대금을 가중하여 재산을 해외로 송금, 축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수출입업체의 편의와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 수출입규모 5천만불 이상 기업임이 확인된 경우 증빙 방식과 상관없이(수출입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 메모, 사진 등) 수출입신고번호 입력하도록 한국은행(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에 권고)과 협의 ② 매년 수출입규모 5천만불 이상 여부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확인된 기업의 서류제출 면제(①) 및 非확인 기업의 서류제출 체크박스 신설 등 시스템 개선 ③ 동 규정위반 송금 및 서류보관기간(5년) 의무해태 시 제재규정 신설토록 조치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상기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세청에서 관련 절차 진행(관계 기관 협의 등)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 협의 후 개선

과제번호 3-23	(건의내용)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조달 관련 규제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정혜윤 사무관(044-215-4752) 임재정 사무관(044-215-4751)	
검토 의견	검토결과	일부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외화차입을 줄이고 단기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하여 외화부채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위기시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해왔던 외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input type="checkbox"/> 한편, 상대적으로 외화부채 및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하는 부채는 자본금으로 의제하여 부과대상 부채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설계 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旣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외은지점은 이미 국내은행이 적용받는 외환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등 우대를 받고 있음도 감안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유동성비율, 중장기외화자금관리비율, 외화안전자산비율 <input type="checkbox"/> 다만,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외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존만기 1년 미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 (부과요율) 계약만기에 따라 차등 부과(2~20bp)→ 만기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인센티브 차원에서 가중평균 만기에 따라 할인을 적용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15.3~6월)
	추진완료 예정일	2015.6월말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15.3~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과제번호 24	한국특허청의 정보제공 제도의 시정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신진섭 서기관 042-481-5397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사항1) 미공개되고 있는 정보제공 내용 공개 요구 <input type="checkbox"/> 정보제공자의 개인 정보 보호 관점에서 정보제공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앞으로는 정보제공자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겠음 <input type="checkbox"/> 한편, 정보제공 내용의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심사관이 정보 제공 내용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현재도 정보제공에 대한 충분한 반론 기회를 출원인에게 부여하고 있음 ▶ (건의사항2) 정보제공자 심사관 면담 금지 <input type="checkbox"/> 정보제공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심사관이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내용 문의를 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른 심사관 면담 제도는 기본적으로 없음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25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Patent linkage)에 관한 약사법의 재검토 【신규】	
관련부처 담당자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박현정 사무관 043-719-282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 곤란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판매제한이 신청된 제네릭의약품의 '허가 정지'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사항) 약사법 개정안*의 '판매제한'을 '허가정지'로 수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0월 국회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 제50조의5 및 6 -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제한 기간 중에 허가 받은 후발 의약품의 약가 등제가 가능하므로, 신약의 약가가 인하될 우려 ○ (검토의견) 금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 FTA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매제한기간 동안 후발의약품이 판매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 후 약가 등제, 그에 따른 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복지부 소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네릭의약품의 판매시기에 맞춰 신약 약가가 조정되고 있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한·미 FTA 제18.9조제5항나호>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근거가 된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사람이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p> </div> <p><input type="checkbox"/> 판매제한 제외사유* 중 '제네릭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삭제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사항) 동일한 등제의약품을 근거로 한 후발 의약품들이라도 실제 특허침해 여부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제네릭의약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판매가 제한되지 않음은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10월 국회 제출된 개정안 제50조의6제2항제6호 ○ (검토의견) 동 조항은 제네릭의약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네릭의 출시를 저지하는 특허권자 등에게 시장진입자 선별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일단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면 그와 동일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26	(건의내용) 후발 약제의 발매 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철폐	
관련부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영삼 사무관 044-202-2751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 곤란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오리지널사의 특허권 남용으로 일정기간 제네릭의 진입을 지연시켜 건강보험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그 손실에 대한 징수는 정당한 행정조치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경우도 무효인 특허권에 기인한 가처분으로 인해 제네릭의 시판이 지연되어 정부가 보험예산 절감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입게 된 손해를 오리지널사가 정부에 배상토록 하고 있음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27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규정의 재검토 【신규】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최원철 사무관 042-481-5578
검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물질을 포함하는 신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p> <p>○ 건의사항에서 들고 있는 예에서 '정제'는 개량신약으로서 개량신약의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신약에 비해 현저히 적어 존속기간 연장대상으로 보기 어려움.</p> <p>○ 아울러 연장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움.</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28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의 적정화·IMD 폐지 【계속/내용변경】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최원철 사무관 042-481-5578
검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부분적 효력범위의 적정화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p> <p>○ 허가받은 화합물이 특허청구범위 화합물에 속하는지(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법 제90조(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에 의한 연장등록 출원 시 유효성분은 허가받은 형태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p> <p>○ 특허법 제95조(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의 해석 및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결과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함.</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29		의약품특허목록 운용의 개선 【계속/내용변경】
관련부처 담당자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박현정 사무관 043-719-282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 (한국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요청)
	검토내용	<p>□ 등재심사중지 및 특허청구항에 기한 제도 운영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사항) 식약처의 등재 심사를 중지하고, 동 제도가 특허청구항에 근거하여 진행됨을 명확화 요청 - (심사 중지) 식약처가 작성한 독자적인 특허청구항은 특허권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식약처의 심사 결과가 특허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직접 관련성 심사 중지* 요청 * '14년 10월 국회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 제50조의2제4항제2호 삭제 - (특허권자 권리 명확화) 후발제약사의 통지·판매제한이 식약처의 심사 결과가 아닌 특허청구항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입법 요구 ○ (검토의견) 우리나라 제도 운영 실무 및 약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운영은 특허권을 기초로 이루어짐 - (등재심사 필요) 등재심사는 무관한 특허에 기해 후발의약품의 출시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 - (등재 사항) 등재심사를 통해 의약품과 관련 있는 특허가 등재되고 있으며, 함께 기재되는 '직접 관련성 정보'는 등재심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서 특허권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매제한 판단 기준) '14.10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특허권자 등이 특허 재송을 제기하고, 적절한 판매제한신청을 한 경우 판매제한이 진행됨을 명확히 함(안 제50조의6제1항 참고)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30		(건의내용) 특허권 침해소송은 특성상 침해행위 관련 증거를 침해자측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제출명령제도 개선 및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제도(구체적 양태 명시)의무 도입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미옥 사무관 042-481-3310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p>□ 특허권의 권리 특성상 침해자측에 침해관련 증거가 편재되어 입증부담의 완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침해는 용이한 반면, 침해는 침해자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침해 입증에 곤란 □ 이에 따라, 침해행위 입증 관련 서류를 문서제출명령 대상으로 하며 피고 실시행위의 구체적인 양태 명시(의무) 도입 등을 포함하여 특허법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음 ○ 다만, 입증부담 완화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의 관계, 입증책임분배원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일본 특허법상의 손해배상 및 문서제출명령 관련 규정도 참조 □ 특허권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14. 12)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 특허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 추진('15년)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31	(건의내용) 영업비밀유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영업비밀보호 교육강화를 통한 타사 영업비밀 존중 의식 육성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변상윤 사무관 042-481-5761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 ('15.2월) 발의 및 산업위 소위심사 예정('15.4.) <input type="checkbox"/> 영업비밀보호 교육강화 및 타사 존중의식 육성 ○ 한국은 매년 영업비밀보호 관련 기업 방문교육, 컨설팅, 세미나 등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타 기업 영업비밀 존중의식 제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영업비밀보호 문화 조성사업 추진('15년 4~12월) ○ 정기교육, 기업 방문교육, 세미나 등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15년 12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수시

과제번호 32	특허법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구자욱 사무관 042-481-8243
검토의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아이디어, 알고리즘)은 현행 특허법에서도 특허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음 * '~장치',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형태 청구항 ○ 반면, 네트워크 상에서 기록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유통·판매(이하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이라 함)에 대한 특허 보호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임 <input type="checkbox"/>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단순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특허청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보호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인정하는 것 외에, 프로그램의 '전송' 역시 발명의 실시 행위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한편, 현재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로 보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김동완 의원, 2014.10.1.)된 상태임 ○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SW 산업계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대응하겠음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미정
	추진완료 예정일 미정
	추진일정 미정

과제번호 33	(건의내용)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어 라이선스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적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미옥 사무관 042-481-3310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어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악의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계산감정인의 도입 등을 포함하여 특허법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음 <input type="checkbox"/> 특허권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14. 12.) <input type="checkbox"/>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 (15.2월) 발의 및 산업위 소위심사 예정(15.4.)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특허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 추진(15년)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34	특허법에 따른 수출 보호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양재석 서기관 042-481-5736
검토 의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에 관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청약하는 행위는 침해로 봄 <input type="checkbox"/>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 행위 중지 가능 <input type="checkbox"/> 또한, 수출의 전제 행위인 생산·사용·양도 행위는 특허권 침해 행위이므로 특허법에 따라 사전 예방 가능 <input type="checkbox"/> 다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 행위 제제는 가능하나, 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특허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수출 행위를 침해로 볼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검토하겠음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35	퇴직 법관의 관련사건 관여 금지	
관련부처 담당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채희만 02-2110-3630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이미 입법으로 해결된 부분임)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113조 제4호) <input type="checkbox"/>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임시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퇴직 법관이 관련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함 ※ 퇴직 심판관의 경우 별도 검토 필요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이미 입법으로 해결된 부분이므로 추진계획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36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특허권을 추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 도입 검토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양재석 서기관 042-481-5736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既 반영)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특허청에서는 통상실시권에 대한 당연대항제도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음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현행 특허법(제118조)</td> <td>개정 검토안(당연대항제도)</td> </tr> <tr> <td>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만 그 등록 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 발생</td> <td>통상실시권이 발생하기만 하면 특허권을 그 후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 효력을 가짐</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동 제안사항은 민법상 일반원칙*과 상반되는 것으로 거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민법상 일반 원칙) 거래 안정성을 위해 등록 등을 통한 공시방법이 수반되어야만 대항력 부여 ** 통상실시권 발생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특허권을 취득한 자의 보호 미흡 <input type="checkbox"/>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등록을 통한 공시가 있어야만 대항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거래안정성 측면과 통상실시권자 보호 측면을 비교 형량한 바, 통상실시권에 대한 당연대항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음	현행 특허법(제118조)	개정 검토안(당연대항제도)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만 그 등록 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 발생
현행 특허법(제118조)	개정 검토안(당연대항제도)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만 그 등록 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 발생	통상실시권이 발생하기만 하면 특허권을 그 후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 효력을 가짐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현재 '16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추진 중임			
	추진완료 예정일	미정			
	추진일정	미정			

과제번호 37		특허출원의 멀티의 멀티클레임(다중종속항) 용인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윤기웅 사무관 042-481-5399
검토 의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p>□ 2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는 복수의 청구항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 심사관 및 법원 등이 하나의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수의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여 발명을 파악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매우 큼</p> <p>○ 또한, PCT, 미국, 중국 등에서도 다중종속항을 금지하고 있음</p> <p>○ 따라서, 제3자 이해의 용이성, 심사관의 업무부담,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38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불복신청 등의 기본기간 장기화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윤기웅 사무관 042-481-5399
검토 의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p>□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과 불복신청 등의 기본기간이 장기화되거나 및 지정기간이 자동 연장되면,</p> <p>○ 심사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권리 불확정기간이 장기화되어 제3자의 감시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p> <p>※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의 경우 일본, 미국 등과 동일하게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39	특허권 존속 연장제도에 있어 외국 임상시험기간 가산 【계속】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최원철 사무관 042-481-5578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출원에 있어 연장기간 산정시 외국 임상시험기간 인정여부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는 국내에서 특허권의 실시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5년의 한도 내에서 연장해주는 제도로, 특허법상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임.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 임상시험기간은 국내 의약품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임. ○ 외국에서의 임상시험은 해당국의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시험이 아니므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0	침해소송에 관한 법원의 특허권 등 유효·무효 판단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이경열 서기관 042-481-5583
검토 의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을 통해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해서도 무효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해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된 상태임 ○ 일본의 경우 침해소송사건에 대한 관할집중·공동대리 등의 도입으로 침해법원의 판단과 특허청의 무효심판에서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임 -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시스템이 구비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 <input type="checkbox"/> 원칙적으로, 부실특허를 대체적으로 무효시키는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효심판 절차가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심판결과와 침해소송에서의 판단 결과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송절차에서 심판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송당사자 절차중지 신청권* 도입 필요 ○ 이를 통해 침해소송 등에서 심판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들의 혼란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법원의 직권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무효·정정·권리범위확인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특허법 제164조제2항 개정)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특허법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행정처 등과 사전협의는 '14. 12. 완료
	추진완료 예정일 '16. 상반기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15. 3.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input type="checkbox"/> '15. 6.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과제번호 41	예견성 있는 안정적 권리의 부여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이경열 서기관 042-481-5583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심판원-법원과의 간담회·세미나 등을 통한 판단기준의 조화 필요 ○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9년 60.1%에서 '14년 53.2%까지 감소 ○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제소율은 '14년 40.3%이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율은 33.7%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성 등의 견해차이로 인한 심결취소 건은 약 50% ○ 심판원-법원 간의 판단실무 조화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심판원-법원 간의 협의체(가칭 『특허쟁송 협의체』) 구성 ○ 판단실무 조화를 위한 간담회, 세미나 등 정례화 추진 <input type="checkbox"/> 심판원-특허법원 공동컨퍼런스 개최 ○ 진보성 등을 포함한 특허요건 판단기준 조화 방안 등 논의
	추진완료 예정일	계속 추진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5. 상반기 : 심판원-법원 간의 협의체 구성 <input type="checkbox"/> '15. 5. : 심판원-특허법원 공동컨퍼런스 개최

과제번호 42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양재석 서기관 042-481-5736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간접 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 및 특허분쟁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따라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측면, 특허권자와 제3자의 형평성 측면, 국제적 조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43		(건의내용) 임대계약시의 위약금비율 규제를 완화할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사무관 044-200-4462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약관심사지침 IV-4. 나 (2)*의 의미는 약관의 형식으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과다하다는 뜻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님 <input type="checkbox"/> 대법원도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계약조항은 과중하여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2009.8.20. 선고 2009다 20475 판결)한 바 있음 <p>*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 예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는 계약기간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에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총액이라 할 것이고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 수준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에도 임대보증금의 10%를 임차인의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44		(건의내용)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 현재 운영 중인 8개 구역 외에 서울 및 수도권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관련부처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김도현 사무관 044-203-4611
검토 의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한국에 대한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관심을 가져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만, 현재 산업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최적 개발을 위해 대규모 외자유치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외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지양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동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과제번호 45	①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반대 ② 서면실태조사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
관련부처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이병건 서기관 044-200-4584
검토의견	검토결과 ① 필요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 ② 수용곤란
	검토내용 ①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관련 <input type="checkbox"/> 2015년 3월 현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 중인데, 필요할 경우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시어 귀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input type="checkbox"/> 국회에서 신고포상금제 도입 법안이 통과·시행되는 경우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 운영과정에서 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 신고포상금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4대 불공정행위에 한정하여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범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됨 ② 서면실태조사 방식 관련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달리 하도급법상 조사에 응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점,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의 범위반협의를 확인과정에서 혹시라도 수급사업자 신원이 원사업자에게 노출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청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 <input type="checkbox"/>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기간을 반기 동안의 하도급거래 내역으로 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향후에도 원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6	(건의내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고시에 복합기(디지털 복사기) 추가지정
관련부처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최익현 사무관(044-203-4242)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既반영)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14.12.31)를 통해 복합기(디지털복사기)를 재제조 대상품목으로 고시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과제번호 47	(건의내용)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운영요령에서 정한 면제 처리 조건 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련부처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선근사무관 043-870-5445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 등은 전문 오퍼레이터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감전·화재 등으로부터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일반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임</p> <p>○ 다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관련고시(운영요령)에 따라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 인쇄 공장 등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안전인증 면제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p> <p>- 따라서, 예시로 제시한 사용환경(전문 오퍼레이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면제범위를 확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p> <p>□ 전기용품이 대형화되고, 융복합화 되면서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사용하는 사무기기의 소비전력이 높아짐에 따라 600W이상의 프린터류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대한한국은 대형프린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소비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2012.6.27)하였음</p> <p>* 미국, 일본 등의 국가나, 관련 IEC 국제표준에서도 제품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가지고 인증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p> <p>○ 향후 안전관리 대상품목의 범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음</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 해당없음
	추진일정	- 해당없음

과제번호 48	(건의내용) 전기용품안전인증(KC) 제도 관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	
관련부처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선근사무관 043-870-5445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용품의 화재·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인증제도로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품사용 환경(제품에 인가되는 전압, 주파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지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p> <p>* 일본 : 전압 100V 또는 200V, 주파수 50Hz · 한국 : 전압 220V, 주파수 60Hz</p> <p>□ 복사기, 프린터기 등의 융복합기기는 감전·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므로 현재의 안전관리수준을 변경할 수 없음</p> <p>* 복사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화재 현황 - 339건(연평균 48.4건, 소방방재청 자료, 2007년~2013년)</p> <p>○ 다만, 복사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의 안전관리 수준과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감전·화재 등의 안전 위해도에 대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관리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음</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 해당없음
	추진일정	- 해당없음

과제번호 49	(건의내용) 전기제품의 KC인증 취득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안광희연구관 043-870-5441	
검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검토의견></p> <p><input type="checkbox"/>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감전·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국내·외 제품 구분 없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하므로 수입제품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음</p> <p>* 전기용품은 나라마다 사용환경이 다르므로 미국(UL인증), 유럽(CE인증), 일본(PSE인증), 중국(CCC인증) 등 외국도 자국민의 안전을 외국에 맡기는 경우는 없음</p> <p>○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부품등)이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안전인증기관의 동일성 확인을 거쳐 그대로 판매하거나, 필요한 경우 파생모델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p> <p><제도설명></p> <p><input type="checkbox"/>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해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과 공장심사기준에 모두 적합해야만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p> <p>○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부품등)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기본모델'이라 하며, 동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파생모델'이라 함</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 해당없음
	추진일정	- 해당없음

과제번호 50	통관시 KC인증 부착유무 확인 강화	
관련부처 담당자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수민 사무관 042-481-7815	
검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세관장의 확인가능여부,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의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있음</p> <p>-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여부를 확인후 통관하고 있으며 * HS10단위 기준 386개품목수</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으로 협업검사체제를 구축하여 ('14.9) KC인증이후 유통단계 불법적발업체의 추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있음</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 제품안전 협업검사 지속 추진(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추진완료 예정일	계속시행
	추진일정	계속시행

과제번호 51		(건의내용) 'K마크' 인증제도의 재검토
관련부처 담당자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문윤아 사무관(02-2100-4425)
검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p>□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로 적합하려면 전자파와 전기 등 안전에 관한 KC인증(법정의무인증)과 환경에 관한 ECO마크 이외 제품 제조공정의 품질에 대한 K마크(Q마크) 인증(임의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p> <p>○ 특히, K마크(Q마크) 인증은 다기능 사무기기의 제조공장 및 공정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외국기업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p> <p>□ 다만, 인증 신청·발급·유지를 위한 기업의 비용부담에 따른 K마크 폐지 건은</p> <p>○ 품질관련 인증, 공공 입찰조건인 K마크(Q마크) 기재 생략 방안은 조달청과 협의·검토하겠습니다.</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p>□ 다기능 사무기기 품질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15.2~6)</p> <p>○ 품질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15.2~3)</p> <p>○ 개선방안 마련 및 내부 확정('15.4~6)</p>
	추진완료 예정일	다기능 사무기기 품질 관련 인증제도 개선방안 수립('15.6)
	추진일정	※ 세부추진계획에 일정 포함

과제번호 52		(건의내용) IT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이동수 사무관 044-215-4454
검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ITA협정은 조약 또는 협약이 아니라 WTO 싱가포르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각료 선언문이며</p> <p>○ 동 각료선언문에 따라 제출한 우리나라의 ITA 양허품목은 다자검증을 거쳐 확정되고, 우리나라의 WTO 양허관세율표 수정절차를 통하여 WTO 양허관세율표에 최종 반영</p> <p>○ 건의사항에서 언급된 플랫패널 디스플레이방식의 프로젝터 등은 우리나라의 ITA 양허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ITA품목의 세율적용이 곤란함</p> <p>*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사용되는 플랫패널 디스플레이방식의 프로젝터는 ITA품목에 포함됨</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53	학원 고액 교습비에 대한 조정명령의 중지 및 학원 설립 시 건축물 용도 제한의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교육부 학원정책팀 이창준 사무관 044-203-6380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교습비 조정명령 제도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교육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유지가 불가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습비 조정명령제도는 원칙적으로 교습비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조정을 명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음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습비 조정명령제도에 관하여 법원에서 그 취지를 긍정 <small>※ 조정명령제도는 수강료의 고액화를 방지하고 사교육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72)</small> <input type="checkbox"/> 한편, 학원의 설립과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시설에서 설립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설립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소관으로 판단됨

과제번호 54	(건의내용) 일본 제품의 수입통관 시 샘플 제출에 관한 개선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를 완화해 줄 것
관련부처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오재준사무관 044-719-2160 검사실사과 전세희사무관 044-719-2220 검사실사과 이심종사무관 044-719-2230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3)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톤의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등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 ○ 현재 양국 관련기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계획 추진일정	

과제번호 55	(건의내용)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급여정지 및 제외처분 시기의 시정
관련부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영삼 사무관 044-202-2751
검토의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하는 방안은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리베이트 적발된 의약품의 처분은 검찰 등의 수사자료, 법원의 판결문 또는 행정처분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과 유사 법원 판례등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의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분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음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56	(건의내용) 희귀의약품 지정 약제중 비용효과성 자료 제출이 어려운 약제는 경제성평가자료(비용효과성자료) 제출 면제
관련부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운신 사무관 044-202-2753
검토의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 신설을 추진중 (‘14.12.17 보도자료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 ○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근거 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규정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중(‘15.2.2~2.21 개정예고) - 개선 내용 : ① 임상적 필요도 ② 근거 생산의 어려움을 동시에 만족하는 희귀질환치료제로서 ③ 3개국(A7 기준) 이상 등재된 약제에 한해 ‘A7국가의 최저가 이하’수준에서 급여적정성 인정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규정 개정
	추진완료 예정일 '15년 4월(시행)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개정예고에 따른 의견 검토(‘15년 3월)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규정 개정(‘15년 3월말)

과제번호 57	(건의내용) 제네릭(후발품)이 2년간 보험청구가 없는 경우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초등재약제(선발품) 약가 회복 요청	
관련부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 044-202-275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특허만료 및 대체 가능한 약의 진입에 따라 오리지널 약의 가치가 일부 하락하여 가격 우대요인이 사라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p> <p>○ 오리지널 약은 첫 번째 제네릭이 등재될 때 1회에 한해 조정됨(100%→ 53.55%(단, 70%로 1년간 가산))</p> <p>○ 또한 제네릭 등재시 제네릭 제약사는 판매예정시기*를 제출하며, 약가 조정에 따른 의견조회를 통해 오리지널 제약사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p> <p>* 예시 : 즉시판매, 2016년1월1월 등</p>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추진일정	해당없음

과제번호 58	(건의내용) 위험분담제도의 적용대상을 ①표준치료법이 없는 의약품, ②표준치료법 실패 후에 사용하는 의약품까지 확대	
관련부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 044-202-275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위험분담제는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 (Positive system)을 살리면서도,</p> <p>○ 대체제가 없는(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포함)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p> <p>*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 :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p> <p>①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p> <p>② 기타 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p> <p>□ 따라서 위험분담제 제도 시행('13.12월~) 초기(1년차)로, 적용대상 약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추진일정	해당없음